

이준희, 「직장에서의 괴롭힘 : 법적 쟁점과 과제」 정오표

[1] p.28 : [관련판례] 위 3행

‘서울중앙지판 2017. 1. 13, 2016가합538467’을  
‘서울중앙지판 2017. 3. 10, 2014가단5356072’로 변경

[2] p.28 : 각주 42

‘서울중앙지판 2017. 1. 13, 2016가합538467’을  
‘서울중앙지판 2017. 3. 10, 2014가단5356072’로 변경

[3] p.106 : [관련판례] 위 11행

‘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’를  
‘현재로서는 정부에’로 변경

[4] p.180 : 위 1행

‘적인 인식능력’을 앞으로 두 칸 이동

[5] p.243 : 위 17행

‘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’에서 ‘국회’를 삭제

[6] p.243 : 위 19~20행

‘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과 함께’를  
‘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의 내용과 통합되어’로 변경

[7] p.243 : 위 20행

‘대안으로 상정되어’를 ‘전부개정안으로 상정되었고,’로 변경

[8] p.243 : 아래 2행

‘의결되어’를 ‘2019년 1월 15일’로 변경

[9] p.246 : 아래 12행

‘배경이 된다’를 ‘배경 또는 제압수단이 된다’로 변경

[10] p.249 : 위 1행

‘신고 의무’를 ‘신고 주체’로 변경

[11] p.249 : 위 19~20행

‘의무를 규정하는’을 삭제

[12] p.250 : 위 1행 '조치가 될 수 있다.' 이후에 추가

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강행규정이므로 근감독관 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.

[13] p.255 : 위 8행

'사업장에서 발생하는'을 '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'으로 변경

[14] p.255 : 위 10행

'하지만 다만'에서 '다만'을 삭제

[15] p.257 : 위 10행

'날부터'를 '날인 2019년 7월 16일부터'로 변경

[16] p.258 : 아래 1행

'날로부터'를 '날인 2020년 1월 16일부터'로 변경